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8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박수현 · 민형배
양문석 · 이기현 · 임오경
조정식 · 이성윤 · 김문수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3항 신설).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제1호 및 제2호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
2.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
3. 생활안정자금

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·금액·상환조건
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자금의 대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<u>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</u>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<u>제1항에 따라</u> 체육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7조 및 「스포츠산업진흥법」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u><신 설></u>	제13조(자금의 대여) ① ----- -----<u>다</u> <u>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</u> <u>한-----.</u> <u>1.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</u> <u>준비 자금</u> <u>2.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</u> <u>3. 생활안정자금</u> ② <u>제1항제1호 및 제2호에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<u>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</u> <u>정자금의 대여 대상 · 금액 · 상</u> <u>환조건 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</u> 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